

의안번호	2213203
의 퇴 인	김기현의원
회 답 일	2025. 11. 6.
추 계 번호	25D5278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의 날을 지정하고, 취지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6,800만원, 2031년 5억 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억 3,600만원(연평균 4억 8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북한인권증진의 날 (안 제9조의2)	468	478	487	497	507	2,436	487

주: 본 추계는 '북한이탈주민의 날'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준용한 것으로,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(북한인권증진의 날)	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합한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의2(북한인권증진의 날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,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통일부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- 유사사례로 통일부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사업의 2025년 예산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을 적용하여 추계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.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0	2.0	2.0	2.0	2.0	2.0

[표 2] 2025년 통일부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사업 예산 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내역사업	예산액
북한이탈주민의 날 (‘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’ 사업)	기념행사 운영비	40
	기념식 용역비	260
	시민참여 문화행사 용역비	150
	합계	450
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의 날을 지정하고, 취지에 맞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6,800만원, 2031년 5억 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4억 3,600만원(연평균 4억 8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북한인권증진의 날 (안 제9조의2)	468	478	487	497	507	2,436	487

주: 본 추계는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준용한 것으로, 실제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